

자 체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2년 구미소방서 자체감사 －

2022. 10.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 수		감 액		추 징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6건	3	3	1	603	0	0	0	0
1	구 미 소 방 서	공용 휴대폰 요금 지원 부적정	1		1	603				
2	구 미 소 방 서	의용소방대 활동기록부 관리 부실		1						
3	구 미 소 방 서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세출예산 집행기준 미준수		1						
4	구 미 소 방 서	건강검진 공가사용 부적정	1							
5	구 미 소 방 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1							
6	구 미 소 방 서	소방시설법 위반대상 조치명령 연 기신청에 따른 승인 부적정		1						

2. 처분요구일람표

1.	공용 휴대폰 요금 지원 부적정 (시정)	1
2.	의용소방대 활동기록부 과리 부실 (주의)	4
3.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세출예산 집행기준 미준수(주의)	6
4.	건강검진 공가사용 부적정 (시정)	9
5.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시정)	11
6.	소방시설법 위반대상 조치명령 연기신청에 따른 승인 부적정 (주의)	14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공용 휴대폰 요금 지원 부적정
소 관 청	구미소방서
관 계 부 서	AAA과
내 용	

구미소방서에서는 기관장에게 매월 업무용 휴대폰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상북도 BBB과에서는 2017. 1. 17.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용 휴대폰 요금 지원 부패 결정(2016-306호, 2016. 9. 26.)¹⁾’과 관련하여 ‘업무용 휴대전화 운용 기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구미소방서를 포함한 직속기관으로 통보(BBB과-○○○호)하였다.

위 계획에는 ‘지원 제외 항목’으로 ‘소액결제, 단말기 할부금, 업무와 무관한 부가서비스, 데이터통화료(정액 요금제 초과 사용분)’을 명시하고, ‘사적용도의 요금 발생 시 사용자 부담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상북도 소방본부 CCC과에서도 2017. 1. 19. ‘소방관서장 업무용 휴대폰 운용기준 알림(CCC과-○○○호)’ 공문을 시행하여 업무용 휴대폰 요금 ‘지원제외 항목’으로 ‘소액결제, 단말기 할부금, 업무와 무관한 부가서비스, 데이터 통화료(정액 요금제 초과 사용분)’를 정하여 경상북도 각 소방관서로 통보하였다.

따라서 위 관서 AAA과에서는 기관장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할 때 통신사로부터 청구된 요금내역 중 단말기 할부금과 사적 용도로 이용한 요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고, 이를 제외한 요금에 대해서만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서울시 등 지자체, 지방 의회, 지방공기업 등 73개 공공기관이 개인 휴대폰을 소유한 과장 등 특정 직급, 직위에 일률적으로 휴대폰 요금을 집행한 것은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에 해당함

그런데 위 관서 AAA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구미소방서 장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하면서 업무와 무관한 단말기 할부금과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등 총 40건 603,023원을 제외하지 않고 예산으로 지원하였다.

[표] 업무용 휴대전화 요금 지원 현황

지원시기		총 지원액 (원)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대상자
연도	월		요금액(원)	요금 내역	
합 계		2,356,940	603,023	총 40건	3명
2019	1	46,790	600	모바일안전결제, 콘텐츠이용료	
	2	55,130	500	모바일안전결제	
	3	55,100	1,179	로그인플러스, 모바일안전결제	
	4	39,540	1,000	로그인플러스	
	5	39,540	1,000	로그인플러스	
	6	48,780	10,190	로그인플러스, 모바일안전결제,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7	48,780	10,190	로그인플러스, 모바일안전결제,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8	48,780	10,190	로그인플러스, 모바일안전결제,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9	48,780	10,190	로그인플러스, 모바일안전결제,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10	48,780	10,190	로그인플러스, 모바일안전결제,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11	48,230	9,690	로그인플러스,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12	48,780	10,190	로그인플러스, 모바일안전결제,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2020	1	48,780	10,190	로그인플러스, 모바일안전결제,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2	48,780	10,190	로그인플러스, 모바일안전결제,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3	48,780	10,190	로그인플러스, 모바일안전결제,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4	48,230	9,690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5	48,230	9,690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6	48,450	9,890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MMS부가정보	
	7	48,230	9,690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9	67,740	26,292	부가이용요금, 단말기 분할상환금	
	10	68,580	27,059	부가이용요금, 단말기 분할상환금	
	11	69,200	27,292	부가이용요금, 단말기 분할상환금	

지원시기		총 지원액 (원)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대상자
연도	월		요금액(원)	요금 내역	
	12	69,020	27,292	부가이용요금, 단말기 분할상환금	
2021	1	68,840	27,292	부가이용요금, 단말기 분할상환금	
	2	68,840	27,292	부가이용요금, 단말기 분할상환금	
	3	68,840	27,292	부가이용요금, 단말기 분할상환금	
	4	68,840	27,292	부가이용요금, 단말기 분할상환금	
	5	69,200	27,292	부가이용요금, 단말기 분할상환금	
	6	68,840	27,292	부가이용요금, 단말기 분할상환금	
	7	68,840	27,292	부가이용요금, 단말기 분할상환금	
	8	68,840	27,292	부가이용요금, 단말기 분할상환금	
	9	68,840	27,292	부가이용요금, 단말기 분할상환금	
	10	68,840	27,292	부가이용요금, 단말기 분할상환금	
	11	68,840	27,292	부가이용요금, 단말기 분할상환금	
	12	73,160	27,292	부가이용요금, 단말기 분할상환금	
2022	2	67,740	5,300	로그인플러스, 콜키퍼, T All 케어 100	
	3	67,740	5,300	로그인플러스, 콜키퍼, T All 케어 100	
	4	67,740	5,300	로그인플러스, 콜키퍼, T All 케어 100	
	5	67,740	5,300	로그인플러스, 콜키퍼, T All 케어 100	
	6	64,190	1,745	로그인플러스, 콜키퍼, T All 케어 100	

- * 로그인플러스 : 본인이 설정한 서비스암호와 제공되는 연산식을 추가입력함으로써 인터넷상의 부정사용 방지서비스
- * 모바일 안전결제 : 별도의 인증서 발급없이 결제서비스 이용
- * 유튜브 프리미엄 : 광고없이 유튜브 이용, 오프라인 저장, 백그라운드 재생
- * T All 케어 100 : 단말기의 분실/도난/파손 대비 보험
- * 콜키퍼 : 받지 못한 전화의 정보를 문자로 알림

조치할 사항 구미소방서장은

- ① 앞으로 소방관서장 업무용 휴대폰 운용기준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업무용 휴대 전화 이용 요금 지원 제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도록 하시고,(주의)
- ② 부당하게 지급된 603,023원은 지원대상자로부터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의용소방대 활동기록부 관리 부실
소 관 청	구미소방서
관 계 부 서	BBB과
내 용	

구미소방서 BBB과에서는 관할 의용소방대의 활동 실적을 관리하여 그에 따른 소집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및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1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의 활동 실적에 따라 소집수당, 활동비 및 포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의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기록부 및 교육·훈련 기록부는 의용소방대원의 수당지급, 포상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므로 의용소방대의 총무부장, 부대장, 대장이 소방대원의 활동내용 등을 확인하여 서명토록 하는 등 활동기록부 등이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의용소방대 총무부장, 부대장, 대장의 서명이 없는 활동기록부를 보완하지 않는 등 의용소방대 활동기록부 등을 부실하게 관리하였다.

[표] 소방활동기록부 작성 미확인 및 소집수당 등 지급 내역

(단위 : 원, 명)

연번	구 분	소 속	활동일자	활동 인원	활동 확인 여부	소집수당 등 지급 여부	금액
	계						201,820
1	의용소방대(남대)	CCC	2018.05.05.	1	부	여	33,640
2	의용소방대(여대)	CCC	2018.02.09.	2	부	여	67,260
3	의용소방대(여대)	CCC	2018.05.05.	3	부	여	100,920
4	의용소방대(여대)	CCC	2018.08.16.	6	부	부	-

그 결과 의용소방대 총무부장, 부대장, 대장의 서명 없이 활동기록부 등이 부실하게 관리되어 소집수당 지급 등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²⁾가 있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구미소방서장은

앞으로 의용소방대장 등이 활동기록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의용소방대 활동기록부에 서명토록 하는 등 활동기록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2) 감사기간 중 활동여부 확인 결과 단순히 서명만이 누락된 것일 뿐 실제로 활동은 한 것으로 확인됨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세출예산 집행기준 미준수
소 관 청	구미소방서
관 계 부 서	AAA과
내 용	

구미소방서 AAA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르면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의 경우는 소모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세출예산 집행기준³⁾을 위반하여 공공

3) 1.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와 신조 공작물 설치 등은 시설비(401-01)로 계상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소모성 물품 구입비,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시험료, 소규모 용역의 경우에는 사무관리비(201-01)로 집행토록 되어 있으며, 재물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사무관리비를

운영비 세출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공공운영비에서 지출된 사무관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시설비 성격의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지출일자	적 요	금액	부적정 지출과목	정당 지출과목
1		내용 생략		공공운영비 (201-02) 시설장비유지비	사무관리비 (201-01) 일반수용비
2					
3					
4					
5					
6					
1		내용 생략		공공운영비 (201-02) 시설장비유지비	자산및 물품취득비 (405-01)
2					
3					
4					
5					
6					
7					
8					
1		내용 생략		공공운영비 (201-02)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및부대비 (401-01) 시설비
2					
3					
4					
5					
6					
7					
8					
9					

그 결과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되어야 세출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어 예산 질서 및 건전성이 훼손되었다.

취득할 수 없는 비정수물품의 구입은 자산취득비(405-01)로 집행하도록 규정

2. 시설비는 건물,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의 신조 및 동부대시설(예 : 난방, 수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도록 규정
3.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집행하도록 규정

조치할 사항 구미소방서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세출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건강검진 공가사용 부적정
소 관 청	구미소방서
관 계 부 서	AAA과
내 용	

구미소방서 AAA과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상북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강검진의 목적으로 공가를 신청한 공무원은 해당 일시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 된 경우에는 근무지로 복귀하거나 신청한 공가를 취소하고 연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아래 [표]와 같이 DDD 소방교 J는 2021. 12. 1. 건강검진을 받고서도 같은 달 6일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공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였고, EEE 소방사 K는 2022. 5. 10. 건강검진이 불가하여 실제로 같은 달 11일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도 신청한 공가를 취소하지 아니하였고, FFF 소방사 M은 2022. 5. 31. 건강검진이 불가하여 실제로 6. 8. 야간근무 출근 전 건강검진을 받으면서도 신청한 공가를 취소하지 아니하였다.

[표] 공가 부적정 사용 현황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공가 신청일	건강검진일	비고
1	DDD	소방교	J ^{주1)}	891203	2021.12.06.	2021.12.01.	
1	EEE	소방사	K ^{주2)}	910718	2022.05.10.	2022.05.11. 2022.06.02.	
2	FFF	소방사	L ^{주3)}	930628	2022.05.31.	2022.06.08.	

주1) 비번일에 건강검진을 받은 후 2021.12.6. 반일공가(4시간) 사용

주2) 2022.5.10. 병원에 늦게 도착으로 인한 검진이 불가하여 5.11. 비번일에 건강검진, 6.2. 비번일에 건강검진 및 재검사를 받음

주3) 2022.5.31. 건강검진센터 늦게 도착으로 인한 건강검진 불가로 6.8. 야간근무 전 건강검진 실시

※ 구미소방서 소방행정과 제출자료 편집

조치할 사항 구미소방서장은

① 앞으로 공가 신청사유를 확인하여 공가사용을 승인하시고, 공가를 신청한 소속 직원이 공가신청일에 건강검진이 불가한 경우 신청한 공가를 취소하고 연가로 변경토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 J가 거짓으로 사용한 공가일(시간)은 2022년 저축휴가에서 차감하시고, ▲ K, M이 거짓으로 사용한 공가일(시간)은 연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소 관 청	구미소방서
관 계 부 서	AAA과
내 용	

구미소방서 AAA과는 2017. 12 .29. 행정업무 지원에 필요한 무기계약근로자 (단순노무)채용 공고를 하고 2018. 1. 4.부터 1. 5.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1. 개인정보 파기 절차 미이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 매체인 경우는 파쇄 또는 소각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으로 완전 파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2018. 1. 4.부터 같은 달 5일까지 근로자 채용공고 기간 중 응시자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초본, 자격증사본 등을 접수한 후 불합격자의 관련 서류는 절차에 따라서 응시자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AAA과-○○○(2018. 1. 12.)호 ‘무기계약근로자 최종합격자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여 사실상 채용 절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응시자(불합격)가 제출한 서류⁴⁾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한 사실이 있다.

2. 채용서류 반환 고지의무 미이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4. 1. 21. 제12326호)」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청구 시에는 반환하여야 하고,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리고, 반환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대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채용 공고문에 채용서류 반환청구 방법과 절차를 기재하는 등으로 구직자에게 알리고, 반환 청구기간이 경과한 채용서류는 파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7. 12. 9.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을 소방서 홈페이지(<https://gb119.go.kr/gm/>) 알림마당에 공고하면서 채용서류의 반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알리지 않고, 공고문 기타사항에는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라고 공고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

4)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 12명이 제출한 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 확인서, 자격(면허)증 사본 등) 중 합격자 1명을 제외한 11명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약 7종 77건

조치할 사항 구미소방서장은

- ① 앞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서류 반환 절차 및 방법을 구직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시고,(주의)
- ② 채용이 종료된 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서류는 응시자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소방시설법 위반대상 조치명령 연기신청에 따른 승인 부적정
소 관 청	구미소방서
관 계 부 서	CCC과
내 용	

구미소방서 CCC과는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에 따르면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에게 조치명령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에 따르면 태풍,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하고,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경매 등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이 불가능 한 경우와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치명령 이행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르면 조치명령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연기신청서에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부하여 조치명령 등의 이행 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연기신청서를 접수받은 소방서장은 3일 이내에 조치명령의 연기신청 여부를 결정하여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르면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관계인이 제출한 조치명령 연기신청서가 재난과 질병 경매 등으로 조치명령 기간에 이행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그 이유와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연기신청 적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조치명령을 받은 경북프라자 등 12개 업소가 조치명령 연기를 승인할만한 증거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신청을 하였는데도 그대로 인정하여 조치명령 연기신청을 부당하게 승인하였다.

[표] 조치명령 등의 기간 연기신청서 접수 승인 부적정 현황

연번	대상명	주소	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일	연기 신청사유	조치명령연기사유(증명여부)	비고
1	○○○	내용 생략	2018.2.3 ~ 4.5	2018.4.6 ~ 4. 25	여러 점포의 영업 시간과 공사업체와의 공사일정 조율이 어려워 조치명령 기간(2018.04.05.)까지 완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연기 신청함	부	
2	○○○		2018.2.19. ~ 4.19	2018.4.20 ~ 5.14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수리(3개소) 금액으로 인한 업체와 입주자회의간의 조율문제로 조치명령 기간(2018.04.19.)까지는 완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연기 신청함	부	
3	○○○		2018.4.20 ~ 5.29	2018.5.30 ~ 6.29	감지기 선로 부분 및 소방기계설비 등 하자보수부분 관련하여 업체와의 일정 조율 문제로 연기 신청함	부	

연번	대상명	주소	조치 명령기간	연기 신청일	연기 신청사유	조치명령 연기사유 (증명여부)	비고
4	○○○		2018.6.29 ~ 8.2	2018.8.3 ~ 10.31	비용과다(공사대금 2억)로 인한 업체선정 문제(협약금) 배관전체 교체예정으로 기간 오래 소요	부	
5	○○○		2018.9.21 ~ 10.18	2018.10.20 ~ 12.18	점포주가 많은 복합건축물로서 수리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과 일부 점주의 폐업 및 공실로 운영회 소집 및 의견수렴에 어려운 상황임	부	
6	○○○		2018.10.26 ~ 12.23	2018.12.24 ~ 2.11	펌프류 발주 소요시간으로 인한 지연	부	
7	○○○		2019.2.14 ~ 2.28	2019.3.1 ~ 3.29	각 상가 점포주간의 의견 조율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연기 신청	부	
8	○○○		2019.1.30 ~ 2.28	2019.3.1 ~ 10.30	임대를 놓기 위하여 사용자를 구하고 있는 중으로 사용자가 결정되면 소방설비 완비 예정. 현재 공실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 결정되면 연기기간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을 할 예정으로 사용자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소방설비 공사를 연기신청	부	
9	○○○		2019.2.1 ~ 3.29	2019.3.30. ~ 12.31	장기수선계획에 없어 조정이 필요하여 향후 입주인 동의 결정으로 신청	부	
10	○○○		2019.3.4 ~ 4.12	2019.4.3 ~ 5.31	부진한 영업상황에따른 경제적 부담과 기일 촉박등으로 04.09. 상인회의를 통해 결정 예정으로 신청	부	
11	○○○		2019.1.17 ~ 4.17.	2019.5.18 ~ 10.11	리모델링 공사중 종합건설 부도로 타업체 선정 중으로 신청	부	
12	○○○		2019.6.2. ~ 7.5	2019.7.6 ~ 7. 31	스프링클러 상향식 공사는 공사업체 일정으로 인해 연기 신청함	부	

조치할 사항 구미소방서장은

앞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명령 연기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주의)